

■ Legal Update ■

미얀마회사법 시행일 확정 및 원천징수 의무 개정

법무법인(유)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

고세훈 수석변호사, 오규창 외국변호사(미국), 신진휴 미국공인회계사

미얀마 정부는 2017년 12월 공포한 미얀마회사법(Myanmar Companies Law, 2017, Pyidaungsu Hluttaw Law No.29, 이하 '新회사법')의 시행일을 2018년 8월 1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회사들에게 新회사법에 따라 재등록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기존 미얀마 내 사실상 모든 거래 대금지급에 대하여 강제하던 원천징수 의무를 상당 부분 폐기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 내용에 대한 회사법 및 세법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겠습니다.

1. 新회사법 시행일 확정

미얀마 대통령실은 2017년 12월 6일 공포된 新회사법의 시행일을 지난 6월 21일 미얀마 대통령실 공고 48/2018(President's Office Notification No. 48/2018)을 통해 2018년 8월 1일로 확정하였습니다(新회사법 주요 내용. [법무법인\(유\) 지평 미얀마 뉴스레터 제38호](#) 참고).

2. 기존 회사 재등록 공고

회사법의 주무부서인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은 2018년 6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총 6개월간) 기존에 미얀마회사법 및 특별회사법(Special Company Act, 1950)에 따라 등록된 모든 회

사는 MyCo(Myanmar Companies Online)에 재등록해야 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재등록은 온라인 또는 직접 DICA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재등록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MyCo 시스템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재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DICA는 2018년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MyCo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회사설립 및 관련 서류 등록업무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변화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新회사법 시행에 맞추어 변경되는 여러 절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숙지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3. 원천징수 의무 관련 개정 안내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는 2018년 6월 18일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한 신규 공고(Notification No. 47/2018)를 통하여, 미얀마 내의 일반적인 재화 및 용역 거래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미얀마에 설립된 회사/지점이 재화 및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대금지급자에게 (대금 수령자의) 소득세 상당으로 대금 지급액의 2% ~ 2.5%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할 것이 요구되었으나, 이번 공고를 통하여 대금수령자가 내국인 또는 거주자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얀마에 설립된 회사/지점(대금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외국인에 대한 지급 시의 원천징수 의무(2.5%)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1) 소득세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 제도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를 대금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법령이 정한 일정한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법령이 정하는 거래는 **(i) 이자소득 지급, (ii) 면허, 상표, 특허권 등의 사용을 위한 로열티 지급, (iii) 국가기관/단체, 협회, 외국회사/사업가, 내국회사가 국내에서 공급/제**

공된 재화/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등입니다. 즉, 대금 중 일부를 떼어 내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세를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아니라) 위 대금을 지급받는 자입니다.** 대금수령자는 대금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 영수증을 교부 받고, 추후 자신의 법인세를 납부할 때에 해당 영수증을 근거로 원천징수된 소득세 상당 금액을 위 법인세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유형 및 세율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별, 대금지급자 및 대금수령자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와 그 세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대금지급자	대금수령자 (지급 상대방)	원천징수 의무	세율
물품 대금, 용역대금	민간 기업/ 합작 기업*	내국인/거주자 외국인	부담하지 않음	0% ¹
		비거주자 외국인	부담함	2.5%
	정부/ 국영 기업**	내국인/거주자 외국인 ²	부담함	2% ³
		비거주자 외국인	부담함	2.5% ⁴

¹ 기존에 2% 였으나 이번 공고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² 내국인에는 미얀마회사법상 내국회사가 포함됩니다. 미얀마에 설립된 외국회사는 거주자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³ 지급액의 합계액이 1년간 1,000,000 Kyats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⁴ 다만 용역 제공자(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국가(가령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역이 동 협약상 사업이윤에 해당하므로 미얀마에 과세권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위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미얀마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금지급자	대금수령자 (지급 상대방)	원천징수 의무	세율
이자 ⁵	민간 기업/ 합작 기업 및 정부/ 국영 기업	내국인/거주자 외국인	부담하지 않음	0%
		비거주자 외국인	부담함	15% ⁶
면허, 상표, 특허권 등 사용을 위 한 로열티	민간 기업/ 합작 기업 및 정부/ 국영 기업	내국인/거주자 외국인	부담함	10%
		비거주자 외국인	부담함	15% ⁷

* 민간 기업/합작 기업은 국가와 민간의 합작회사, 내국회사, 외국회사, 합작투자, 조합, 협회 등을 포함합니다.

** 정부/국영 기업은 연방/지방/주 정부 및 국가가 소유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기업(국가와 합작회사, 내국회사, 외국회사)이 재화/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금 수령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금수령자가 비거주자 외국인(ex.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2.5%)가 있습니다.
- 정부/국영 기업이 재화/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여전히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에 설립된 외국회사(거주자)가 정부/국영 기업에 납품을 하면 대금의 2%가 원천징수 되고, 해외 소재 회사(비거주자)가 정부/국영 기업에 납품을 하면 대금의 2.5%가 원천징수 됩니다.

⁵ 미얀마에 설립되어 조세 사정을 받는 외국지점(foreign branch)은 비거주자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지점에 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금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외국지점은 국세청으로부터 별도 조세 사정을 받기 때문에 거래 시에 즉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⁶ 한국-미얀마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을 받을 경우 10%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⁷ 한국-미얀마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을 받을 경우 10% 또는 15%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간 기업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대금수령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비거주자 외국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원칙 15%)가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외국인이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협약이 정한 낮은 세율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민간 기업이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대금수령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대금의 10%, 비거주자 외국인인 경우 15%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비거주자 외국인이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협약이 정한 낮은 세율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대한민국 회사가 이자/로열티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대한민국 국세청이 발급한 거주자 확인서를 미얀마 국세청에 제출하여 낮은 세율(15% → 1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액 납부 기한 및 불이익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대금 지급 후 7일 이내에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세액의 10%)뿐만 아니라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몫인 원천징수세액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4) 이중과세방지협약 활용

한편,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대금수령자가 미얀마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약상 지위 확인을 국세청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협약상 지위가 (미얀마 국세청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동 협약이 정하는 우호적인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얀마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국가는 대한민국,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영국, 베트남, 싱가포르, 라오스 등 8개국입니다. 참고로 일본, 홍콩, 캄보디아와 사이에는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원천징수 제도 개정의 시사점

기존의 원천징수 제도는 사실상 국내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 기업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거래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과세관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가 원천징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물품/용역 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사전 세수 확보를 포기하더라도 납세자의 고충을 덜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전문가]

고세훈 수석변호사 E. shko@jipyong.com T. +95-99-7181-5829

오규창 외국변호사(미국) E. kcoh@jipyong.com T. +95-1-510366

신진휴 미국공인회계사 E. shinjh@jipyong.com T. +95-1-510366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JIPYONG MYANMAR Limited)

No. 140/A, Than Lwin Road, Bahan Township, Yangon, Myanmar

T. +95-1-510366 F. +95-1-526381 E. myanmar@jipyong.com

<http://www.jipyongmyanmar.com>